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8
----------	-----

제출년월일 : 2021.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임명, 심의안건에 따라 간사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체화 (안 제2조)

나.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위원장 보좌 및 직무 대행에 관한 역할을 부여(안 제3조, 제4조)

다.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심의안건에 따라 해당 업무 팀장이 간사를 맡도록 함.

라.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관계법령 발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8. 3. ~ 2021. 8.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업무담당 과장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제5조와 제4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9조)와 제11조(중전의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 내용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u>평창군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u> 2. <u>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u> 3. <u>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u> 	<p>제3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u>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담당 과장</u> 2. <u>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u> 3.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u>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2조(기능)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신설>

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 하되 -----
-----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회의 운영) ① -----
-----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생략)

제8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 1. 회의일시·장소
- 2. 출석위원 직·성명
- 3. 심의안건·내용
- 4. 기타 중요사항

<신설>

<신설>

② (생략)

제10조·제11조 (생략)

제12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삭제>

제8조(회의록) ① -----

-----.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 성명
- 3. 심의사항 및 진행사항
- 4. 위원 발언 내용
- 5. 심의결과
-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제10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
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의결-----
-----.

관계법령 발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18.>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지가 산정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미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4., 2016. 8. 31.>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민원과 민원과장 한운수
연락처	(033) 330 - 2122